

배포 일시	2022. 6. 9.(목)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실 물류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진홍 (044-201-4016)
		담당자	사무관 정일웅 (044-201-4018)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6월 9일 10시 기준 상황

< 집단운송거부 관련 국토부 입장 >

- 정부도 이번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장관은 직접 상황을 관리하면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 2차관 주재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매일 실시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화주, 운수사 등) 대책회의 등을 열어 물류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
- 안전운임제는 법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빨리 논의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화물연대와 물밑대화를 진행하고 있음
- 정부는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화로 해결할 것이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임

□ 화물연대 동향

- 4,500여명이 철야 대기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 상대로 계란을 투척하는 등 운송 방해 실시

- 어제 18시 40분 경 서산 대산공단에서 정상운행하는 화물차를 몸으로 막는 화물연대 조합원 6명이 검거됨
- 금일 7,200여명이 집회 예정(집회 신고 기준)으로, 화물연대 조합원(2.2만명)의 약 33%가 참여 예정

□ 항만 등 주요 물류기지 동향

- 현재까지 항만,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음
-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0.2%)* 은 평시(65.8%)와 유사하나 부산·인천항 등 일부항만의 반출입량은 감소

*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

-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정상출하가 제한되고 있으나 사전 수송 효과로 아직까지는 물류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주요 조치사항

-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 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

참고 1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 및 일일 반출입 현황(6.9 10시 기준)

(단위 : TEU, %)

구분	화물 장치율						일일 반출입량						
	장치 능력 (A)	장치량		장치율(%)			전일 17시- 금일 10시 반입 (C)	전일 17시- 금일 10시 반출 (D)	반출입 (C+D)	전일 반출입 (E)	평시('22.5월 동시간대) 반출입량		
		금일 10시 (B)	전일 (10시)	금일 10시 (B/A)	전일 (10시)	평시 '22.5월					반입	반출	합계
부산항	592,335	452,180	441,424	76.3	74.5	70	6,362	5,266	11,628	7,913	13,961	16,388	30,349
인천항	112,921	92,131	92,108	81.6	81.6	79.1	531	626	1,157	1,067	2,119	2,929	5,048
광양항	110,856	67,574	67,248	61.0	60.7	61.0	0	0	0	0	1,457	1,549	3,006
평택 당진항	39,520	25,228	25,045	63.8	63.4	57.7	17	34	51	48	685	928	1,612
울산항	29,464	15,631	15,768	76.3	53.5	55.6	0	0	0	0	259	229	488
군산항	8,006	1,342	1,346	16.7	16.8	21	0	1	1	98	56	81	137
마산항	3,700	588	591	15.9	16.0	29.7	5	8	13	8	50	66	116
대산항	8,255	2,333	2,333	28.2	28.2	28.4	0	0	0	0	110	139	249
포항항	24,041	2,679	2,639	11.0	11.0	11.7	2	0	2	18	25	25	50
동해항	1,150	120	120	10.4	10.4	18.0	10	10	20	48	24	24	48
목포항	7,902	343.2	357.2	4.5	4.7	4.5	67.6	80.8	148.4	170.8	105	161	266
경인항	3,252	799	968	24.0	29.0	26.0	3	5	8	1	51	52	103
계	941,402	660,948	649,947	70.2	69.0	65.8	6,998	6,031	13,028	9,372	18,902	22,571	41,472

참고 2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 통행료 면제

- (면제기간) '22. 6. 7(화) 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 (면제구간) 고속도로 **전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 (대상차량)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10톤 이상 견인차,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면제방법) **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사후 환불**
* (선불카드) 사후 충전, (후불카드) 카드사 미청구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 (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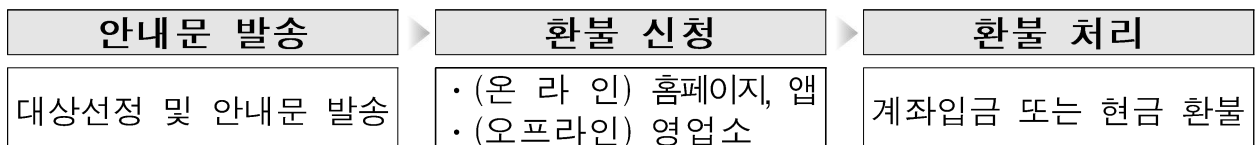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 (발급장소)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전 영업소** (367개소)
- (발급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포함)
-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 방문
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출력)

□ 통행료 환불

- (환불대상)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
- (환불시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
- (환불절차)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참고 3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피해차량 보상 지침

I. 목적

-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시 非화물연대 운행 차량 및 운송복귀차량 (이하 “운행참여차량”이하 한다)에 대한 운송방해행위로 불안을 느낀 운전자들이 운행을 기피하여 화물수송 차질 초래
- 화물연대의 운송방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운행참여차량에 대해 정부가 보상(자기차량손해보험·공제 미가입 차량만 해당)함으로써 운행참여차량의 운행을 독려하여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호(재정지원)

II. 피해보상 대상 및 기준

□ 대상 차량

- 화물연대의 전국적 또는 국지적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운행참여 차량으로서 화물을 운송중이거나 화주 또는 주선사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운송을 위한 주·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
- 자기차량손해보험 및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 차량은 제외

【 화물자동차 피해발생 유형(예시) 】

- 운행 및 주차중인 차량에 돌맹이를 던져 앞유리, 후미 등을 파손
- 주차중인 차량의 타이어 파손
- 피견인차량(트레일러)의 제동장치(공기호스 등) 절단
- 도로에 못 등을 뿌려 타이어 파손
- 주차중인 차량의 앞 유리에 스프레이 분사
- 주차중인 차량을 쇠파이프 등으로 파손하거나 방화
- 주차중인 차량의 엔진오일 주입구에 설탕 주입
- 기타 화물연대의 불법·부당 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 대상 피해 기간

○ 집단운송거부 발생 ~ 상황 종료시 원칙

- * 다만, 집단운송거부前 발생 건이더라도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경찰 확인)에는 지원 추진

☐ 보상 금액

○ 시·군·구의 “운송방해피해보상심의위원회”(공무원, 손해사정인, 차량 정비관계자 등으로 구성)에서 요청한 보상금액 지급

Ⅲ. 보상 절차

☐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피해발생 내용과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

○ 피해신고시 피해내역, 추정수리비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 피해자가 경찰관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제출서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계약서(또는 화주확인서), 수리내역서, 사진 등 증빙서류

☐ 시·군·구별로 「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 * 공무원·손해사정인·차량정비관계자 등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피해보상금은 시·군·구청에서 피해자 본인 또는 차량정비업체로 지급

참고 4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임시 허가 지침

□ 목적

-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호에 따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업무처리 기준

- (대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전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 (허가기간) 신청일과 별개로 7일('22.6.7~6.13)간 임시허가를 부여* 하되, 집단운송 거부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 매 7일마다 자동 연장됨

* 허가기간 : 1차시기(6.7~6.13), 2차시기(6.14~6.20), 3차시기(6.21~6.27)

- (허가신청 기간) '22.5.30. 09시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 (처리방법)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 접수는 관할에 관계없이 모든 관청(시·군·구)에서 접수·처리

☞ 자동차가 접수관청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신청서를 접수 한 관청은 관할관청에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
⇒ 관할관청은 즉시 유상운송허가증을 발급하여 접수관청으로 송부 ⇒ 접수관청은 팩스로 송부받은 유상운송허가증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

□ 업무처리 절차

- ① (허가신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② (접수·검토) 접수관청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과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정보를 확인 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유상운송 허가증을 즉시 발급
- ③ (허가증 부착) 자가용 소유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절차 >

